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7,361,164	15,820,835
일반회계	492,875,059	14,786,252
특별회계	34,486,105	1,034,583
공기업특별회계	6,896,324	206,89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896,324	206,890
기타특별회계	27,589,781	827,69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18,783	24,56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50,774	199,52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45,042	22,351
수질개선 특별회계	9,043,939	271,31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740,429	202,21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40,748	73,22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447,98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